

11월 10일 (Tue) 13시30분 발표

# 부산시 코로나19 현황

총 확진자 (누계)	추가확진자 (오늘)	완치	현재 치료중	사망
598명	1명	555명	28명	15명

※ 부산시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하는 확진자 수가 다른 이유는 집계방식과 발표기준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  
 - (집계방식) 질병관리청은 최초 검사 기관 기준으로 확진자를 집계, 부산시는 부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확진자를 기준으로 집계  
 - (발표기준시점) 질병관리청은 당일 0시 (전일 24시) 기준으로 발표, 부산시는 당일 기준 수시 발표

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- 출입자 명단관리, 마스크 착용 등 준수

※ 월,수,금 13시 30분 온라인 브리핑합니다. ▶

[코로나19 지속가능관리방안 브리핑\('20.11. 4.\)](#)

사회적 거리두기

확진자 이동경로

코로나19 발생현황

코로나19 지원정책

인터넷 방역단 / 클린존

의료지원 / 심리상담

시민 행동수칙

공지사항

코로나19 Q & A

## 사회적 거리두기

사회적 거리두기 (11.7. ~ 해제 시까지)

마스크착용 의무화 관련 Q&A

구상권에 관한 모든 것

마스크 의무화의 모든 것

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발령

## 부산광역시 거리두기 1단계

(2020.11. 7. ~ 해제 시까지)

생활 속 거리두기로  
안녕한 부산을 만들어 갑시다



구 분	거 리 두 기 1 단 계 (11.7. ~ 해제 시까지)	
중점관리시설 (9종)	(공통) 핵심방역수칙 의무화	▲ 마스크 착용 ▲ 출입자 명단 관리 ▲ 환기·소독 ▲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
	유흥시설 5종(클럽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)	▲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	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▲ 노래·음식 제공 금지 ▲ 4㎡당 1명 인원 제한
	노래연습장	▲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
	실내 스탠딩 공연장	▲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	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, 150㎡ 이상)	▲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▲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▲ 테이블 칸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▲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-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-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일반관리시설 (14종)	공연장 / 학원(교습소 포함) / 직업훈련기관 / PC방/ 오락실·멀티방 / 목욕장업 / 결혼식장 / 장례식장 / 영화관 / 워터파크·놀이공원 / 이·미용업 / 독서실·스터디카페	▲ 마스크 착용 ▲ 출입자 명단 관리 ▲ 환기·소독
	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	▲ 마스크 착용 ▲ 환기·소독 ※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

구 분	거 리 두 기 1 단 계 (11.7. ~ 해제 시까지)	
	실내체육시설	▲ 마스크 착용 ▲ 출입자 명단 관리 ▲ 환기·소독 ▲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마스크 착용 의무화	중점관리·일반관리시설 / 집회·시위장 / 실내 스포츠 경기장 / 대중교통 / 의료기관·약국 / 요양시설 / 주·야간보호시설 / 고위험 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 / 지자체에 신고·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	
국공립시설	▲ 소관 부처·지자체에서 수립한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▲ 경륜·경정·경마장, 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%로 제한	
사회복지 이용시설	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, 가능한 경우비대면서비스 병행  ▶ (아동) 어린이집, 지역아동센터, 다함께돌봄센터 등 ▶ (노인) 노인복지관, 경로당, 노인주간보호시설 등 ▶ (장애인) 장애인복지관, 장애인주간보호시설,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▶ (기타)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	
모임·행사	▲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·행사 실시 가능 ▲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,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·협의 필요  ▶ (행사) 집회·시위, 설명회(투자설명회, 재건축설명회 등)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페스티벌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▶ (사적 모임) 동창회, 동문회, 야유회, 동호회, 워크숍 ▶ (각종 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	
스포츠 관람	거리두기, 마스크 착용 등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50% 관중 입장	
교통시설 이용	마스크 착용 의무화	
등 교	2/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, 지역·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과대·과밀학교는 2/3 유지 권고	
종교활동	정규 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, 모임·식사 자제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	
직장근무	▲ (공공기관) 기관별·부서별 적정비율(예: 전 인원의 1/5) 재택근무 등 실시,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 **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▲ (민간기업) 공공기관 수준의근무 형태 개선 권고 재택근무가 어려운밀폐·밀집 사업장*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*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	
행정명령	◎ 선박 출입자 전자출입명부(QR코드) 도입(해운항만과-6207) : 8.19. ~ 별도 해제 시까지 ◎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(건강정책과-25023) : 8.25. ~ 별도 해제 시까지 ◎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(공고2020-321, 버스운영과) : 8.25. ~ 별도 해제 시까지 ◎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,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(공고2020-339, 소상공인지원담당관) : 9. 4. ~ 별도 해제 시까지 ◎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문판매업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고시 (고시 제2020-435호) : 2020.11.6.	
위 반 시	시설·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	

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(2020.11.7. ~ 해제시까지)



#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

## 부산시는 이렇게 적용됩니다.

구분	생활방역	지역적 유행 단계		전국적 유행 단계	
	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	<b>부산시</b> 15명 미만	<b>부산시</b> 15명 이상	※세 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 ① 2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2단계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	전국 400명~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	전국 800명~ 1,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
	<b>수도권</b> 100명 미만	<b>수도권</b> 100명 이상			
	<b>타권역</b> 30명 미만 (강원·제주 10명 미만)	<b>타권역</b> 30명 이상 (강원·제주 10명 이상)			
모임 행사	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	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 이상 금지	100인 이상 금지	50인 이상 금지	10인 이상 금지
종교 활동	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·식사 자제 권고 (숙박행사 금지)	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% 이내로 제한 모임·식사 금지	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% 이내로 제한 모임·식사 금지	비대면 예배 20명 이내 인원 제한 모임·식사 금지	1인 영상만 허용 모임·식사 금지

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(2020. 11. 13.부터)

# 마스크 착용 의무화

마스크 **줍!** 쓰자

## 부산시는 이렇게 적용됩니다.

구분	생활방역	지역적 유행 단계		전국적 유행 단계	
	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마스크 착용 의무화	중점·일반관리시설*, 대중교통, 콜센터, 의료기관·약국, 주야간 보호시설, 요양시설, 유통물류센터, 집회·시위장, 실내 스포츠 경기장, 지자체에 신고·협의를 500인 이상 모임·행사	1단계 +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추가	실내 전체, 실외 위험도 높은 활동	실내 전체,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	

\*중점관리시설(9종) : ①유흥시설 5종(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 ⑥노래연습장 ⑦실내스탠딩공연장 ⑧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⑨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, 150㎡ 이상)

\*일반관리시설(14종) : ①PC방 ②결혼식장 ③장례식장 ④학원 ⑤직업훈련기관 ⑥공연장 ⑦영화관 ⑧놀이공원·워터파크 ⑨오락실·멀티방 ⑩목욕장업 ⑪실내체육시설 ⑫이·미용업 ⑬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 ⑭독서실, 스터디카페

※사회적 수용성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범위는 차등적으로 확대